



금융위원회

금융위원회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통보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3에 따라 (가칭)㈜파이어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2. 등록 후 (가칭)㈜파이어스톤자산운용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기재, 기재누락과 같은 사위(詐僞)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 등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붙임 :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증 1부(별도송부). 끝.

금융위원회위원장



수신자 (가칭)주파이어스톤자산운용 대표이사, 금융감독원장

주무관

배지현

행정사무관

윤우근

자산운용과장

전결 2022. 11. 7.

고영호

협조자

시행 자산운용과-4079

(2022. 11. 7.)

접수

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금융위원회 (세종로)

/ <http://www.fsc.go.kr>

전화번호 02-2100-2665

팩스번호 02-2100-2648

/ baejh0413@korea.kr

/ 비공개(7)